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 : 해당없음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 : 해당없음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III. 법 제11조제1항제3호 : 해당없음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IV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1	개인	47명	발명진흥법 제24조의2

※ 심의·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